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10249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강정목, 곽빛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겸 담당변호사 김태현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95,72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7. 21.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607호로 'C이 원고에 대해 4억 원의 금전채무를 변제기 2018. 3. 31., 지연이자 연 15%로 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C은 2017. 7.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7. 7. 24. 원고에게 진주시 E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과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C은 2018. 8. 8. 재차 위 4억 원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4억 2,5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합의서

이하 갑(채권자): 원고, 을(채무자): C, 병(보증인): 피고

제1조(을, 병의 채무승인)

① 을은 갑으로부터 2017. 4. 21. 1억 원, 2017. 5. 8. 3억 원 합계 4억 원을 차용한 사실과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2017. 7. 21.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제1항 기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제2조(채무변제 약정 및 보증)

① 을은 갑에게 원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비용을 고려하여 합계 4억 2,500만 원을

2018. 9. 28.까지 변제하며, 병은 이를 연대보증한다.

② 을과 병이 제1항의 채무를 2018. 9. 28.까지 완제하지 아니할 경우, 을과 병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③ 위와 같은 채무변제 약정은 2017. 7. 21.자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나, 이 경우에 그 채권압류에 기초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금정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291,722,0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9. 3. 21.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같은 날 위 압류통지가 C에 도달한 사실, 부산금정세무서장이 C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의 압류 재산 명세에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근저당권부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증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된 사실, 2022. 11. 16. 기준 이 사건 압류 관련 원고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83,552,7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부산금정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보증채무의 수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보증채무에도 미친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2022. 11. 16.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원고의 체납액 383,552,710원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게 채권이 이전되어 원고가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22. 11. 16.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 중 이 사건 압류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추심권이 이전된 채권액과 원고에게 남은 채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채권액: 원금 425,000,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9. 29.부터 2022. 11. 16.까지의 지연손해금 351,643,835원1)
- 2022. 11. 16. 현재 원고의 체납액: 383,552,710원
- 원고의 남은 채권액: 위 체납액을 원고의 채권액 중 지연손해금(351,643,835원)과

원금(425,000,000원)에 차례로 총당하면, 원금 393,091,125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총당 다음 날인 2022.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로서 위 남은 채권 원리금 393,091,12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22,895,72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C이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C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와 제3자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설령 원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C이 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2)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체납자인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없다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증증서와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된 내용대로 C이 원고에게 4억 2,500만 원을 차용하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 지급이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따라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22,895,725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앞서 본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최해진, 판사 이호태

1) = 425,000,000원 × 20% × 1510일/365일, 원 미만 버림

2) 제43조(처분의 제한)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채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